

특별명예퇴직에 따른 보수/복지 관련 안내

□ 퇴직금

- 퇴직금청구서 제출 : 사직서 제출시
 - 청구서 작성시 대부금 잔액이 있는경우 “대부금 상환 위임란”에 서명
- 지급일 : 퇴직일로부터 14 일 이내
 - ※ 2010.1.14 일 지급 예정이며, KT Lifeplan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세금원천징수 및 회사대부금 공제 후 개인별 퇴직금 지정계좌로 지급
 - 퇴직금 수령을 담보로 한 약정계좌는 그 약정계좌로 입금(국민은행 약정시)
 - 법정퇴직금 : 회사(30%), 보험사(70%, 8 개사)에서 개인별 입금
 - 명예퇴직금 : 회사에서 개인별 입금
 - ※ 퇴직금 공제 : 미상환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대학학자금 등
- 퇴직금 산정방법 확인 : e-HRM 시스템/ 인사/ 급여/ 퇴직급여/ 퇴직금개산조회

□ 고용보험 (실업급여)

- 수급기준 : 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 수급액(일수) :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 일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지급(최고액 일 40,000 원)
 -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 월이내 지급 받을수 있음
 - ※ 퇴직금 총액 1 억원 이상일 경우 신청일로부터 3 개월간 수급 유예
- 신청절차 : 실업신고(퇴직자) -> 수급자격 결정(14 일 이내) -> 실업급여 지급(1~4 주후)
- 신청서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주민등록증, 본인명의 통장계좌번호 제출
 - ※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시기에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노동부에 일괄 제출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http://www.ei.go.kr> , ☎ 1350)
- 신청기간 : 퇴직후 익일부터 신청 가능

□ 국민연금

- 계속 불입 여부
 - 퇴직하여 소득이 없는경우 국민연금 불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계속 불입을 희망할 수 있음
- 신청 및 문의기관 :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c.or.kr> , ☎ 1355)

□ 건강보험

- 자격상실 : 퇴직과 동시에 자격이 상실 (회사에서 상실 신고)
 - 자격상실 후에는 “지역가입자 취득” 또는 “피부양자 등제제도” 를 이용
 - 임의계속가입자 특례규정 신설 (‘07.7.1 일 시행)에 따른 본인 선택
 - 재취업 없이 직장자격 유지 희망시 “임의계속가입자” 유지 가능
 - 보험료 선택 : 지역보험료와 직장보험료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 선택 가능
 - 신청 기간 : 퇴직익월 말일(1.31 일) 전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 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 1577-1000

□ 개인(연금)저축

- 계속불입 희망시 : 자동이체등을 통한 가입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 해지희망시 : 개인적으로 가입한 금융기관에 해지 신청
 - 서류 : 개인연금증서,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도장

□ 우리사주

- 우리사주 인출 : 별도의 인출 요청없이도 1.20 일까지 보유수량 개별 입고
- ※ e-HRM 에 등재된 삼성증권 계좌 ☞ 사전 계좌 현황여부 확인 요망

□ 2009 연말정산

- 퇴직년도 근로소득 정산을 위한 연말정산 서류 제출 : 2010.1.20 까지
 - 준비 서류는 연말정산 안내메일 발송(‘09.12.15 일, 21 일)시 첨부 예정임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 2010.1.15
-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http://www.yesone.go.kr> , ☎ 110

□ 증명서 발행

- 라이프플랜 홈페이지(www.ktlifeplan.com) 접속후 증명서 요청
 - 4 대보험 안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지급 내역, 최종분 급여지급내역서,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기타 사항

- 복지기금(경조사비, 대학학자금, 의료비, 교육보조비 등)은 ‘09.12.31 까지 신청
- 재직 중 부여받은 복지포인트는 퇴직 후에도 사용 가능
- 세부사항은 “전직지원서비스 매뉴얼” (KT Lifeplan -고객센터-자료실) 참조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위한 재취업 활동 지원금입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http://www.ei.go.kr>)를 참조

<실업급여의 종류 및 상세설명>

구분		요건
구직급여		·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피보험 단위기간) 이상 근무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퇴직금 및 퇴직 위로금 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 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 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여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6개월 이상 안정된 직장에 재 취직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것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 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 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답으로 알아보는 실업급여

2008. 8



www.molab.go.kr

실업급여

?



구직급여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588-1919

인터넷 <http://www.ei.go.kr>

>> 본 자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 받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한
JOB CENTER

My work-Tomorrow
고용지원센터



문답으로 보는 실업급여

I. 실업급여 지급대상	1
1.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2.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2
3. 본인이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3
II. 실업급여 지급액	4
1. 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4
2.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4
3.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6
4. 재취업을 위해서는 비용이 드는데, 그런 경우 지원은 없나요?	7
5.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7
III. 실업급여 지급절차	8
1.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8
2.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9
3.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9
4.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경우 실업인정은 어떻게 하나요?	10
5. 섬지역 거주자는 별도의 실업인정 방법이 있나요?	10
6.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11
7. 몸이 아파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11
IV. 부정수급	12
1.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요?	12
2. 부정수급을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12
3. 취업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13
4. 부정수급은 어떻게 적발하나요?	13
5.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14
6.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4
V. 심사 및 재심사청구	15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5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	16

Q&A

I. 실업급여 지급대상

1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의 조건과 함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 미만(유급휴일도 포함)이고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고의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

※ 위 3가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는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1주~4주 단위)을 받은 경우 지급되므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또는 6개월 이상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재취업시점에 따라 미지급 금액의 일부(1/3~2/3)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조기 재취업수당의 경우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게 재고용되거나,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 동 수당을 받은자는 지급이 제한 됩니다.

3 본인이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거나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등의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 사유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2 관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임신, 출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에 복직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할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됨

II. 실업급여 지급액

1 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 최고액 : 1일 40,000원

↳ 최저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연령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장급여라고 합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등이 있으며, 구직급여 일액의 70%(훈련연장급여는 100%)가 지급됩니다.

※ 훈련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장으로부터 3회 이상 구직알선을 받았으나 취업할 수 없었던 사유가 기술(기능)이나 전문지식 부족 등 업무수행 능력 부족에 의한 것으로서 훈련을 받을 경우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 지시에 의해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훈련연장급여

- **지급요건**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연령 ·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훈련지시를 한 경우(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지급기간** : 훈련기간(최대 2년)

개별연장급여

- **지급요건**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이 되지 못한 경우
 - 부양가족 중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나 1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을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것
 - 급여기초임금일액이 5만원 이하일 것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일 것
- **지급기간** : 60일 이내

3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이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급기간 내에 그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면,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최대 4년)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취업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것을 「수급기간 연장신고」라 하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해야합니다.



수급기간연장사유

- 본인의 질병·부상(상병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임신·출산·육아(육아의 경우 생후3년 미만의 영아에 한함)

4 재취업을 위해서는 비용이 드는데, 그런 경우 지원은 없나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50km가 넘는 지역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숙박비 등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된 경우로서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하게 된 경우 이동거리와 가족수에 따라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는 노동시장 탈퇴 연령에 해당되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구직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III. 실업급여 지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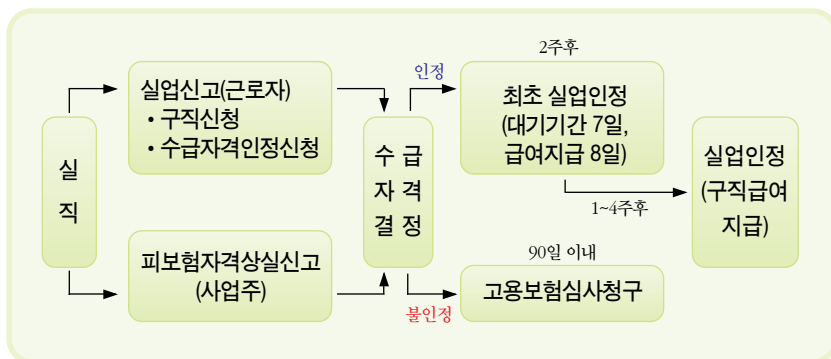
1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의 신고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수급자격을 불인정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서로 불인정 통지를 하게 되며,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1주~4주 범위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 다만, 실업신고 후 2주가 되는 날에는 실업인정일 지정여부와 관련없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 구직급여지급절차



2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실업인정이란 퇴직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자격자는 최초실업인정일 이후에는 1주~4주 범위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지난 해당실업인정기간동안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실업인정을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최초 구직급여 지급은 실업신고일로 부터 2주 후 최초 실업인정일에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8일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된다.

3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날에 출석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채용시험 응시, 수급자격자의 착오(착오의 경우는 단 1회만 인정)로 불가피하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경우 실업인정은 어떻게 하나요?

수급자격자가 28일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서 월 1회 지정한 날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훈련기관 직원)으로 하여금 실업인정 신청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별도의 구직활동은 면제됩니다.

다만, 야간 훈련수강자의 경우는 실업인정일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5 섬지역 거주자는 별도의 실업인정 방법이 있나요?

실업인정특례 적용대상 지역에서 지정된 섬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격자는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 실업인정특례를 신청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간에 우편·팩스·인터넷등을 이용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실업인정 특례를 인정받은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6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실업인정일에 작성한 재취업활동 계획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재취업 활동이란 입사원서 제출·면접 참가 등 재취업 활동과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구인처에 입사 원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박람회 등에 참석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그러나 지역신문 등을 보고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여 동일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몸이 아파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부터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본인이 질병·부상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V. 부정수급

1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 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사례로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을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부정수급한 날 이후의 구직급여 지급중지, 사법처리 등 가혹한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 경미한 부정수급의 경우라도 1회만 정상 참작이 될 뿐입니다.

회사 관계자가 부정행위에 개입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묻게 됩니다.

※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허위 기재 신고로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별도의 과태료 (200~300만원)가 부과 됩니다.

3 취업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1일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사업자등록이나 위탁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는 경우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신청 또는 실업 인정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부정수급은 어떻게 적발하나요?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하여 노동부의 고용보험 전산망을 비롯한 4대보험,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의 주기적 조회 등 부정수급 자동 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제보, 탐문확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무작위선정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의 부정수급 검색과 신고 포상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 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탐문 등에 의해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정수급액의 반환, 지급중지,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 징수 및 형사고발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본인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므로 절대 해서는 아니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6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정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0%(최대 10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08. 4. 30 부터 포상금이 상향되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 보장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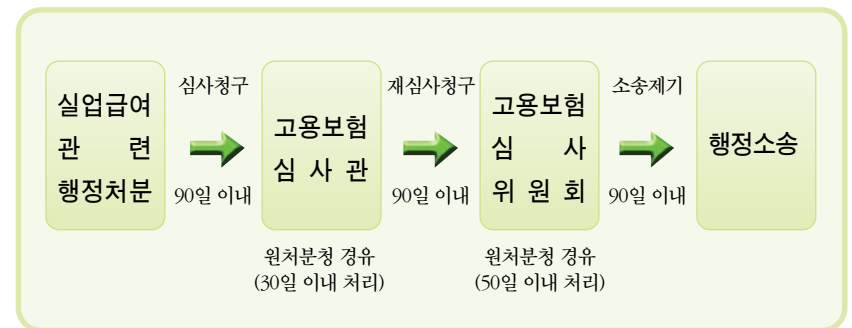
V. 심사 및 재심사청구

1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확인·수급자격 불인정, 실업 불인정, 실업 급여의 지급제한·반환명령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재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의심사 청구절차



● 연락처

- 고용보험심사관 : 02-6922-0899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02-2004-7961~6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

관 서	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
서 울 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02-2004-7050-60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02-3468-4764-70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02-2142-8981~8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02-2077-6079-86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	02-2699-2366-76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02-2171-1710-9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02-3282-9305-7
의정부지청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031-828-0912-5
	구리고용지원센터	031-564-9091
고양지청	고양종합고용지원센터	031-920-3910-4
춘천지청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	033-250-1914-8
강릉지청	강릉종합고용지원센터	033-610-1934-9
	속초고용지원센터	033-637-2673-5
원주지청	원주종합고용지원센터	033-734-9090-2
대백지청	대백종합고용지원센터	033-550-8643
	대백종합고용지원센터 심책출장센터	033-573-9911-5
영월출장소	영월종합고용지원센터	033-371-6251-5
부산청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051-860-1941-5
부산동래지청	부산동래종합고용지원센터	051-559-2501-4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051-330-9951-6
창원지청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055-239-0910-5

관 서	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
창원지청	마산고용지원센터	055-298-8219
	진해고용지원센터	055-547-6277-9
울산지청	울산종합고용지원센터	052-228-1901-7
양산지청	김해종합고용지원센터	055-330-6402-9
	김해종합고용지원센터 밀양출장센터	055-356-8225-6
	양산고용지원센터	055-372-6234-6
진주지청	진주종합고용지원센터	055-760-6730-1
	하동고용지원센터	055-884-8219
통영지청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	055-641-9090
	거제고용지원센터	055-637-5490-1
대구청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053-667-6006, 12
	경산고용지원센터	053-812-2473-5
대구북부지청	대구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053-605-6501-5
	대구강북고용지원센터	053-606-8000-5
포항지청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054-284-1351-2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울진출장센터	054-783-0841-2
	경주고용지원센터	054-778-2506-9
구미지청	구미종합고용지원센터	054-440-3310
	김천고용지원센터	054-431-2728-9
영주지청	영주종합고용지원센터	054-631-1919 2400
	문경고용지원센터	054-556-8219-22

관 서	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
안동지청	안동종합고용지원센터	054-651-8063-4
경인지청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032-460-4940-9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032-540-5834-44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031-231-7813-9
	용인고용지원센터	031-289-2234-7
평택지청	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	031-646-1239-41
	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 인성출장센터	031-671-1921-3
부천시청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032-320-8901-4
	김포고용지원센터	031-995-6011-4
안양지청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031-463-0732-6
	광명고용지원센터	02-2688-8141-2
안산지청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2-6940-5
	시흥고용지원센터	031-412-1900
성남지청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031-739-3130-1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이천출장센터	031-632-9898
	광주고용지원센터	031-762-5791
광주청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062-609-8510
전주지청	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	063-270-9110
	정읍고용지원센터	063-532-8216
	남원고용지원센터	063-631-1919

관 서	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
익산시청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	063-889-0054-67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 김제출장센터	063-548-1919
군산시청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	063-450-0542-6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 부안출장센터	063-581-7637-9
목포지청	목포종합고용지원센터	061-280-0500
	목포종합고용지원센터 강진출장센터	061-434-7791-2
여수지청	순천종합고용지원센터	061-720-9107-26
	여수고용지원센터	061-650-0142-5
대전지청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042-472-8268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금산출장센터	041-751-3219
	공주고용지원센터	041-857-8028
	공주센터논산출장센터	041-736-8298
청주시청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043-230-6731-6
	옥천고용지원센터	043-731-7414-5
천안지청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041-620-7491-5
충주시청	충주종합고용지원센터	043-850-4031-5
	제천고용지원센터	043-652-9090
보령지청	보령종합고용지원센터	041-930-6221-2
	서산고용지원센터	041-661-5600-10